#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2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 홍기원 · 정진욱 · 박상혁

민병덕 · 김교흥 · 박정현

박희승 • 복기왕 • 전현희

윤종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 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 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45일로 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료휴가-----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 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 간 중 45일로 한정한다.
② · ③ (생 략)
2 · ③ (현행과 같음)